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명예회복 공청회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1년 5월 28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02-766-4624)
- 주관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원회
- 후원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명예회복 공청회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1년 5월 28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02-766-4624)
 - 주관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원회
 - 후원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식 순

- 인사말 : 권오현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상임대표)
- 경과보고 : 정명섭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공동대책위원장)
- 축사 : 이우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 토론회 : 이덕우(민주화운동정신계승 공동집행위원장, 민변변호사)

- 기조발제1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조국(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3

- 기조발제2 : 민주화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의 의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 - 박석률(남민전사건, 국보사건대책위) 16

- 지정토론 : 정영선, 노희찬, 서상섭, 김삼웅, 박연철, 홍순석 25

- 결의문 낭독

- 폐회

〈첨부자료〉

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건의서 43
2.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에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들의 입장 48
3. 국가보안법폐지와 박정희 기념관 반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결의대회 성명서 50
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52
5.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64
6.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67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석률, 최민, 정명섭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한지 무려 6개월이 지났다. 이는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한 것인데 이렇게 늦어진 전반적 이유는 법안 제정 및 위원회 설치 시에 예상했던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현재 8440건 신청) 신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심사가 늦어지는 상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400여 건이 심사되고, 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자심사 및 유족심사분과위원회(이하 관련자심사분과)에서는 1000여건이 심사되어 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이 중 국가보안법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에 대하여서는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소신껏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이 법이 제정될 때부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하여서는 간간히 우려들이 나왔었다. 과연 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부터, 설사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결정을 과감히 할 수 있느냐, 수구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등등이 그런 우려의 내용들이다. 그런데 엊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구로구청 농성사건 관련자들의 인정과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심의위원회에 항의공문을 보내오고,

동아투위 사건 관련자들의 인정에 대해 동아일보사에서 항의하는 등 일련의 상황들이 심의위원회의 입지를 압박해 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에서는 지난 3차 회의를 통하여 더 이상 국가보안법 사건 심사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심의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게 어떤 관점을 갖고 국가보안법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국가보안법 사건이 민주화운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 논거를 가지고 제기할 때라는 판단 하에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히 국가보안법사건 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장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힘을 더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 주체들은 이를 계기로 공동대응에 힘을 결집하여 이후 우려되는 결과 및 사태에 더 높은 단계의 투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대책위원회 경과보고

정명섭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 공동위원장)

1. 국보대책위 경과보고

- 2000년 8월 31일 :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조직사건 관련자 1차 간담회 - 국보조직사건대표자회의 소집키로(사노맹/제헌의회/민추위/혁노맹 사건 관련자 참석)
- 2000년 9월 20일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1차 대표자회의 - 국민연대와 함께 연대하기로 결정(남민전/제헌의회/민추위/사노맹/혁노맹/삼민/진보민청/민애전/인천연대 참석, 그 외 인민노련, 보임다산, 반제동맹 등은 결정 위임)
- 2000년 9월 27일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2차 간담회/ 각 국보사건별 대응 모임
- 2000년 10월 16일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 국민연대 공동접수 참여(남민전/제헌의회/민추위/사노맹/사회주의과학원/민학련/전학련/민정련/노동해방문학 등 국보조직사건 관련자 접수 참석 및 접수 : 전국 접수자 약 150여명)
- 2000년 10월~11월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공동대응모임(남민전/ 제헌의회/사노맹 중심), 민주명예회복법 개정안 및 국민연대 수련회 등에 적극 참여
- 2000년 11월 29일 :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 확대회의 및 국보폐지투쟁참여

(남민전/사민청/민애전/중부지역당/사노맹 관련자 등 30여명 참석)

- 국보사건 공대위 구성, 국보폐지 공동참여, 보상심의위 공식방문 등 결의

- 2000년 12월 6일 :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 설치-국민연대 28차 집행위
- 2000년 12월 7일 : 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 1차 회의
 - 대책위 공동위원장(박석률/최민/정명섭), 부위원장(이은경)
 - 남민전, 사노맹은 국민연대 공식가입/대책위 참여자는 1만원씩 기금 낸다.
- 12월 14일 : 국보대책위 국보폐지에 관한 광고
- 12월 15일 : 국보대책위 대표단 보상심의위 공식 방문
- 2001년 1월 : 최민 상임집행위원장, 정명섭 명예회복위원으로 활동
- 2001년 1월 22일 : 전북 지역연대 국보사건대응 모임과 간담회
- 2001년 2월 : 국보대책위 2차 회의
- 2001년 3월 21일 : 의문사 제보자, 양심선언 찾기 및 법개정서명 서울역 캠페인에 참여
- 2001년 4월 11일 : 국보대책위 3차 회의 - 국보사건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개최하기로/ 전체 대회는 이후 하기로

2. 국민연대 국보대책위 사업 내용 및 이후 과제

1) 국보사건 관련자들의 조직화

- 조직사건별 조직화는 연락의 용이함은 있으나 과거의 조직의 구심력 상실의 한계
- 동시에 개별 국보사건 관련자들의 조직화를 병행한다.
-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국민연대 국보사건 대책위 게시판 신설 및 활용
- 국보사건 관련자(국보피해자) 전체 대회에 대한 모색

2) 당면 국보폐지투쟁에 관심과 참여 조직

- 12월 14일 대책위 및 제 사건 연서명의로 국보폐지투쟁에 참여하는 광고
- 국보사건 관련자들 중 현재 운동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부 선전
- 2001년 6월 국보폐지 총력투쟁에 함께 결합 예정

3) 보상심의위 심의 대응

- 12월 15일 8명의 대표단 보상심의위 방문/국보사건에 심의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 국보사건대책위 자문단을 교수 및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대응논리 작성 및 제출 예정
- 국보사건에 대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지 성명서 및 서명 작업 추진 예정

4) 국보사건 대책위 재정 계획

- 조직, 개인 대책위 참여 모두 신청인 1인 1만원을 기본회비로 낸다.
- 신문광고는 참여조직별 5만원, 개인은 1만원씩 별도로 낸다.
- 국보사건 명예회복 공청회를 위한 조직사건 중심으로 재정분담키로 함

祝
辭

李愚貞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 委員長)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委員長을 맡고 있는 李愚貞입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民主化運動 同志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感謝와 敬意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인 「國家保安法 事件」의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에 대하여 그 노력들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公聽會의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조국」 교수님과 「박석률」 선생님, 사회를 진행하실 「이덕우」 변호사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서상섭」 의원님, 「김삼웅」 주필님, 「박연철」 변호사님, 「노희찬」 부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지 이제 10개월 째에 이르고 있고 보상 등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지는 6개월 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成果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이에 대한 諒解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形式的으로는 민주화보상법 등에 의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이 크신 분들에 대한 個別的인 補償을 통해 이 분들의 생활안정과 국민화합 도모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각 개별사건을 심의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歷史的 再評價作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도 중요성을 부

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어려운 점은 이 법의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民主化運動의 範圍에 대해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상당한 隔差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격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현실적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을 전제로 할 경우라면 우리는 되도록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면, 민주화운동권에서는 다 아는 명백한 사안인데 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와 논의가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국민들에 대한 자연스런 民主化教育이라는 점에서 그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청회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하게 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신청자들을 위한 審議基準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위원회가 안고 있는 다른 어려운 과제의 해결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민연대 관계자 여러분과 공청회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感謝드리며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8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조 국(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문제상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제1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제정을 통하여 전태일 열사 등 많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사회·역사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되게 되었다는 점은 중대한 진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현재 이 법률의 해석과 집행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그 중 민주화운동에 종사한 활동가 사이에서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사에 대한 동 법률의 적용문제이다. 현재의 문제상황은 미묘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채 실정법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야말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하여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였던 세력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보상법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문제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및 ‘민주화보상지원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2.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활동

‘민주화운동보상법’ 상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행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제2조 제1항). 이러한 정의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다름 아닌 집권세력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문란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보안법 위반활동, 특히 ‘좌경적’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이므로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점에서 잘못이 있다.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또는 공산주의와는 범주가 다른 개념으로 ‘독재’ 또는 ‘권위주의’에 대한 대립개념이다.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상적 경향이 ‘우’일 수도 있고 ‘좌’일 수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이는 ‘우’의 방향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상당수는 ‘좌’의 방향에서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어느 쪽이든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을 희망하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한 사람의 경우의 대다수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음은 여러 자료(예컨대, 강령 또는 규약 등)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사실 권위주의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현신성과 철저성으로 말하자면 후자가 더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탈냉전과 평화의 현시대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냉전적 시각을 벗어야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의 대부분은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권위주의 체제의 ‘폭력적 전복’을 주장한 활동은 그 수단의 폭력성 때문에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역시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상황적 조건을 무시한 견해라고 보인다. 87년 6월 항쟁으로 합법적 공간이 확장되기 이전까지는 “민주화운동”은 철저하게 금지되었다. 당시는 국가 자체가 거대한 폭력덩어리였다. ‘5. 16 쿠데타’, ‘긴급조치’, ‘광주민중항쟁’ 진압 등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자는 주장은 “저항권”的 행사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신념의 표현에 다름 아니었다.

셋째,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처벌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간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처벌된 “사회주의운동 조직”의 경우, 그 강령과 규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용하고 있는 언사(言辭)의 격렬함을 제외하고 보자면, 그 내용과 수준은 현재의 ‘민주노동당’과 대차를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

약이 ‘좌파’로 분류될 수 있음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이 정당이 합법화되어 있음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활동한 ‘좌파’ 조직 역시 재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3.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등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성장한 ‘통일운동’을 수행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 경우를 ‘민주화운동보상법’상 “민주화운동”에 포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법률문언상으로는 “통일”이라는 문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 제약된 중대한 이유가 분단이었다는 점이 쉽게 공유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때, ‘통일운동’은 “민주화운동”的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의 남북간의 상황전개를 고려하고 향후 민족통일의 전망을 고려할 때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운동’은 재평가받아야 한다.

4. 조직 또는 과장사건의 문제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체제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문과 가혹행위가 수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 자체에 대하여 조직과 과장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의 문언이 얹매여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놓쳐서는 안되며, 다수의 사건에서 조직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었음을 상정하며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은 “민주화운동”에서 배제할 발생할 문제점

- 1) 동일한 반독재운동조직에 속하였던 사람도 지도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면 지도부와 하부 조직원은 달리 평가된다.
- 2) 시위나 파업 등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도 국보법 관련자로 분류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별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 3)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어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비판받을 수 있다.

민주화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의 의의와 역사 바로 세우기

박석률 (국가보안법사건대책위원회)

1. 서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은 과거 수십년에 걸친 권위주의(독재) 시대의 종결을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나아가 역사적으로 기념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이는 일제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자주·독립의 투쟁이 기념화되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많은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위해 싸운 활동가들이 일제하의 독립운동 자와 같은 반열에 서서 새롭게 위치지워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구 세력과 절연하는 과거 청산의 기조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구 세력의 일부와 연합하여 성립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민주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으로 약칭)이 공포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에서는 심의위원회로 약칭)가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청 8440건 중에서 400여건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되고 관련분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까지 1000여건에 불과하지만 그 중에서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은 1건도 없다는 현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러한 양상이 작금의 개혁지체가 개혁실

종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와 같은 맥락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문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사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독재정치의 폭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대중들의 투쟁역량이 가장 침예하게 그리고 일시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을 때인 1960년은 4·19혁명으로, 1980년은 5월 광주항쟁으로, 1987년은 6월항쟁이라고 불리는 투쟁교양기의 빛나는 봉우리를 기록해왔다.

여기서 1980년의 5·18광주민중항쟁만이 우뚝 설 수 없는 것이기에 그에 선행하는 부마항쟁의 기념화로서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에 부산에 민주공원이 세워졌으며,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 멸실될 뻔했던 4·19가 4월 혁명으로 역사에 자리잡게 되었고, 수십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여 역사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4·19와 5·18, 그리고 6·10에 이르기까지의 간구한 투쟁사는 그 상징적 봉우리만 갖고서 연관되는 역사적 의미가 드러나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멀리는 50년대의 전쟁아래 이승만 독재에 저항했던 흐름이 4·19라는 큰 흐름을 만들었고, 박정희 파쇼독재에 저항했던 간구한 투쟁사에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앙심적 지식인, 언론인 등의 일신의 희생을 무릅쓰는 투쟁의 기록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를 계승하여 얼굴만 바꾸어 계속되는 전두환 등 군부 쿠데타 세력에 대한 치열한 저항은 6·10 항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분출되었으며 그 이후의 자주·통일 투쟁으로 이어져갔다.

여기까지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한 마디로 선행하는 운동역량의 지속적인 투쟁의 계승 없이는 역사상 빛나는 어떠한 봉우리도 그 이름을 들어내지 못했을 거라는 점이다.

역사를 연면히 발전시켜온 운동의 계기성과 연속성을 무시하고 그 앞뒤의 흐름을 끊어버린 채 특정한 운동역량, 정치세력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고, 그 참 흐름을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그 한가지를 말한다면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의 참여자가 민주화유공자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고 있는데 그에 선행하는 시기 및 그 이후 시기의 운동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수많은 민주열사, 민주 투사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이라는 절차 없이 5·18민주화 운동민을 특별하

게 취급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조치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입각하여 볼 때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 이루 어진 또 하나의 역사 왜곡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부의 과거 청산의지의 부재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을 따름이다.

3. 민주화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의 의의

박정희독재정권은 초기 한일글육외교 반대, 한일회담 비준 반대에서 3선개헌 반대에 이르기까지 대학가(고등학교 포함)가 3·4·5월을 맞이하여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열면 으레 조기방학이 실시되어 학생들의 출입을 봉쇄했었다. 그러다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반정부투쟁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를 날조하여 주요 활동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을 들씌워 반정부 투쟁을 잠재우려고 하였다.

유신체제 철폐를 주장한 1974년의 학생데모를 민청학련이라는 학생운동조직에 2차 인혁당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처럼 국가보안법사건을 조작해내고 긴급조치를 꺼내어 극형으로 다소려 민주화투쟁을 잠재우려고 한 사건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민주화투쟁은 박정희, 전두환 파쇼 독재의 극악한 인권탄압, 정보공작, 폭압, 처형 등에 의해 기나긴 침체기에 빠지고는 했는데, 장기간의 침체 국면을 이겨내어 짧은 상승 고양기로 반전시켜 불굴의 투쟁 대오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청년·학생, 노동자들에 의한 활동가 그룹 나아가 투쟁의 통일전선적인 지도역량을 뿌어 내려는 선진 조직 등이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 활동이 경이적으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짧은 투쟁의 상승 고양기를 저지하고자 독재 정권은 공안 국면을 조성하여 민주화 투쟁의 고리를 끊어내고 고립, 분산시키기 위한 탄압 전술로서 국가보안법을 미구 들이대어 80년대 후반 이후로 웬만한 의식화모임도 이 그물을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서 그들 파쇼 독재 세력이 들씌운 부당한 조직 혐의를 일일이 유형별로 밀할 수는 없으나,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국가변란을 기도했느니, 이적활동에 해당하느니 하는 조직에 대해 개괄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자.

박정희의 3선개헌으로 모자라 유신으로 영구집권하려는 헌정밀실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민청학련과 2차인혁당 사건의 조작이 필요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전국적 규모의 운동을 통일전선적으로 뿌어내려

고 한 남민전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으로, 또한 80년대 초의 전국민주학생연맹사건-일명 학림사건, 부사지역의 사건은 이를 본떠서 무림이라고 했다. 이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의 집권 시나리오의 구성부분으로 조작이 필요했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통치권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 때마다 민주화추진위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인민노련 사건, 사노맹 사건 등 수많은 활동가들의 조직적 항거와 투쟁의 기본 성격을 왜곡하는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들 전두환, 노태우 군부세력이 불의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 내란을 음모하고 실행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처럼 구체성을 가졌을 때 성립하는 것이 내란죄인데 하물며 정당한 저항권행사를 국가변란기도니 이적활동이니 하고 조작했던 그 부당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잠시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 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독재정권의 폭압이 극도에 달하였으나 국민은 그러한 불의의 정부를 대체할 다른 수단을 갖지 못할 때 그 불의한 정부를 폭력적으로 개폐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 저항권사상을 근대 국가에서 승인하는 명문의 규정이 바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프랑스 대혁명기의 인권선언 같은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 헌법 전문에서 유일하게 저항권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군부쿠데타 세력은 4·19를 의거로써 축소하고 5·16을 마치도 혁명인 것처럼 호도하려고 했으나, 5·16과 차별화를 지으려는 전 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하여 5·16혁명 운운하는 표현은 헌법 전문에서 삭제되었으며, 전두환 쿠데타 세력도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침탈한 행위에 대해 내란죄 및 내란음모죄 등으로 단죄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1960년 아래의 불의한 쿠데타 세력이 사법절차에 따라 단죄 받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내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 줌으로써 그 시초 선상에서 민주헌정을 파괴한 5·16쿠데타 세력까지 응징하는 과거청산은 일단 물건너가는 형국이 되어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16과 유신 쿠데타가 민주헌정을 파괴한 주범으로 낙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독재 권력에 저항한 국가보안법관련 조작사건이라는 주된 민주화운동의 활동 역량들은 그 투쟁의지와 기여도에 대하여 미땅한 명예회복의 귀감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자리잡아야 힘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략적인 사고의 틀을 벗지 못하는 수구세력과의 일전을 회피하는 여·야당 및 집권 세력의 불철저성으로 인해 그 의의가 사장될 뻔한 국면에 처해 있다.

4. 결어에 대신하여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이 땅에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시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본연의 목적에서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과거의 진실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또는 침희의 절차 없이 어느 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생활안정을 위해 알맹이 없는 명예회복이라는 수사적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를 집어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집권세력이 5·18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민주유공자법을 따로 구상하여 이를 통과시키려한 데서도 그 일면이 들어 난다.

독일의 국제법학자 테오 반 보벤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진실의 공개와 인권 침해에 대한 시죄, 피해자의 치유,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을 들고 있으며, 적어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행된 인권 침해는 당시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십년의 세월에 걸쳐 따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은 건국이래 보다 근본적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과 과거청산의 정신이 맞물려 진행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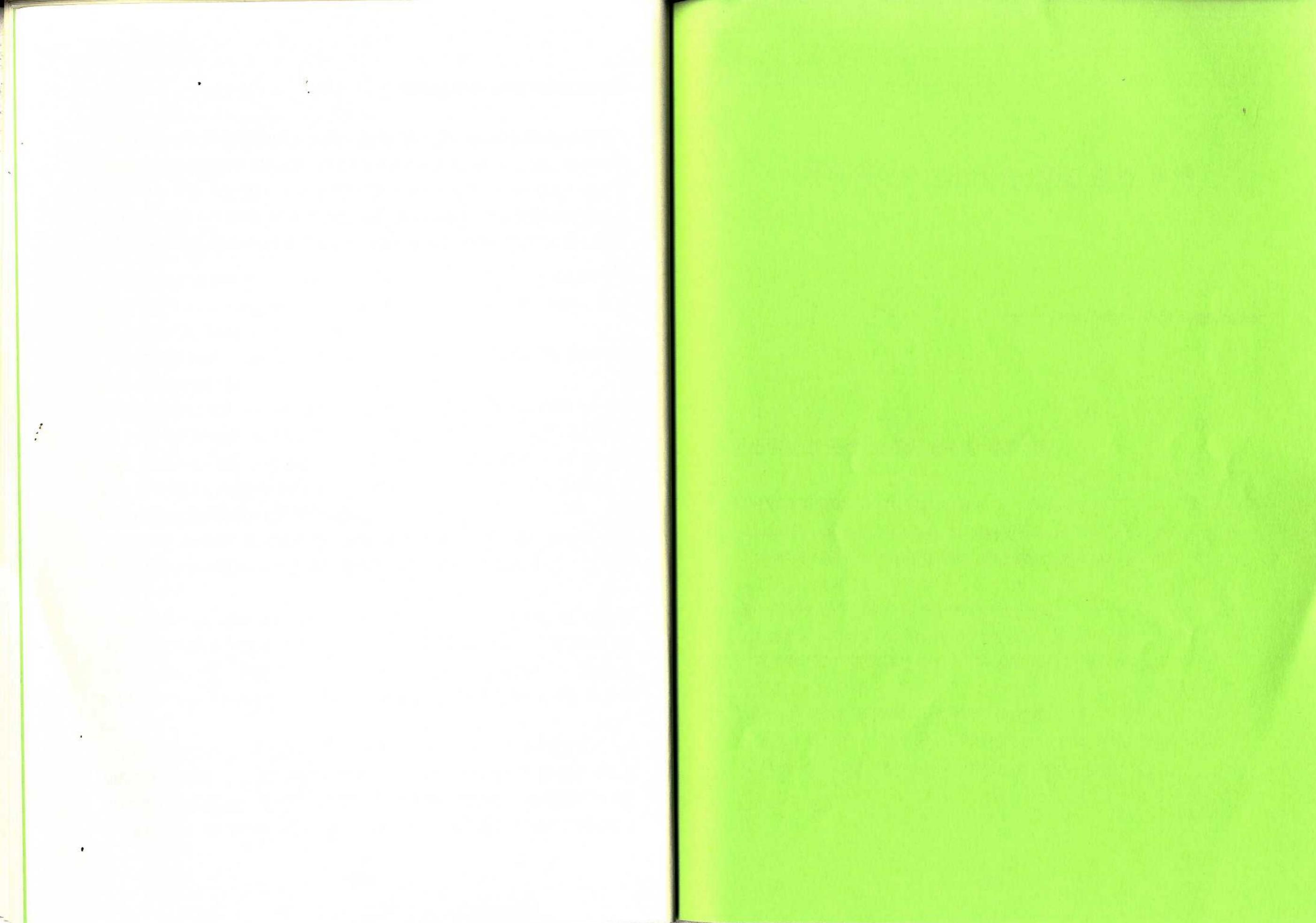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청산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참고해 볼 때 가장 필수적인 과정 없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잘 되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상론을 접기로 한다.

작금 우리의 현실은 민주화 운동의 침체기에서 상승 고양기로 가는 길에서 견인치의 역할을 했던 이른바 국가보안법관련 조직사건 및 개별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애써 회피하거나 무시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행태가 버젓이 고개를 들거나, 민주화운동의 기본흐름을 부인하거나 독재시대의 정권안보용 이데올로기에 매달리려고 하는 자태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은 민주유공자예우법으로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행 법률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시안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주력군이었던 조직운동 사건 이른바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을 더 이상 자체하지 말고 빠른 심의를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동으로 기여하는데 성실히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민주화운동 정

신계승국민연대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 결여를 비롯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정의가 협의의 의미에 머물러 있는 법 규정의 근본적 문제 등은 민주화 유공자법을 별도 제정하려는 국회 내 움직임과도 조절이 필요한 시인이나, 말만 꺼내 놓고 국민의 정부 말기까지 시간만 벌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결과가 안되려면 국회와 행정부, 언론의 제몫의 역할이 긴요하며 우리는 올바른 과거 청산의 기조 위에서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지고 역사적 교훈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미력이나마 소중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國家保安法 違反事件 審查 進行 現況

정영선(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及補償審議委員會)

■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서 접수 및 추진 현황

□ 총접수 현황(2000. 10. 20 현재) : 8,440 건

- 보상신청: 917건(사망 189건, 상이 720, 행방불명 8)
- 명예회복 신청: 7,523건(유죄판결 4,287, 해직 2,950, 학사징계 286)

□ 시·도 2차사실조사 (2001. 5. 16 현재) : 8,127건 (96%)

- 보상신청: 917건(사망 189, 상이 720, 행방불명 8)
- 명예회복신청: 7,210건(유죄판결 4,247, 해직 2,701, 학사징계 152, 기타 110)

□ 분과위 심의·의결 현황(2001. 5. 25 현재) : 1,864건 (22%) / 965

- 인정: 1,453건(78%) (사망36;상이176;유죄판결1,001;해직178;학사징계59;기타 8)
- 불인정: 411건(22%) (사망29;상이142;유죄판결47;해직156;학사징계10;기타 27)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현황 (2001. 5. 25 현재) : 1,051건 (12%)

○ 인정: 812건 (78%)

○ 기각: 230건 (22%)

■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사건」 심의 진행 및 추진 현황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신청현황 및 유형

○ 전체 접수건 (8,440건) 중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은 약 9% (750건 내외)임.

○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 중 이른바 조직사건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 제7조 3항)은 412건 (55%), 친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제7조 5항) 관련사건은 285 (38%), 기타(집입·탈출, 불고지죄 등) 52건 (7%) 정도로 분류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90%가 제7조 관련 위반사안이며, 특히 제7조 ③항 관련 위반사건이 75%에 이르고 있음을 참고할 때, 1차접수시에는 조직사건관련자의 신청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친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관련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심의 진행 상황

○ 심사원칙 결정 - 제 8차 본 회의(2000. 12. 18)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8차 본 회의(2000. 12. 18)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사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적 심사방침을 결정함.

-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사건」 심의에 관련하여 법률 제2조 제2호 각목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바, 유죄판결 중에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유죄판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죄명만으로 구태여 따로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 내용을 개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한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이 된 조항 및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이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침작되어야 한다"

○ 자문교수(조국) 초청 강연 (2000년 12월 29일)

○ 전문위원실 내부 토론 및 세미나 - 소위원회 구성 등 (2001년 1월~2월)

○ 국가보안법 심사기준(안) 초안 마련 (2001년 3월~4월)

- 자문교수단 자문의견 수렴

- 분과위원회 토론 및 의견 수렴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심의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 민주화운동 개념에 대한 법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한 기준안 마련의 어려움

- 법개정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

○ 개별 신청사건의 다양·복잡성 및 전문적 검토 필요

- 각 사건별 역사적 배경 및 상황의 진위파악에 따른 시간 소요 및 유사 사건이라도 유형이 매우 다양함에 따른 업무의 복잡화

○ 과중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현행 비상임위원회 체제의 한계 노정

○ 예상을 초과한 신청서 접수와 이로 인한 업무 지원 인력의 부족

□ 현재 추진 상황

○ 본 위원회에 「국가보안법 기준마련 소위원회」 구성, 구체적 기준 작성 추진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신청 시안별 분류 및 유형화 작업 진행중

부관참시(剖棺斬屍)여선 안된다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1. 법률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을 왜곡하는 것을 경계한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 의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 여부에 관한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을 보건대 이 법에 따른 관련자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각종 피해를 당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면 될 것이다. 즉 '관련자'의 인생관과 철학, 사상과 신념 그리고 종교는 이 법에 따른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을 적용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부당한 확대 해석과 무리한 유추 해석이 가해진다면 이는 법 제정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제2의 인권유린, 2차 가해를 결과할 것이다.

실제 나라와 민족의 장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로 단결하여 싸운 결과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도 성취된 것이다. 이 법률이 군부독재타도를 위해 싸우고, 노력하다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제 1조)으로 하고 있듯이 이 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는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했는지 여부만 기리면 될 것이다. 이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를 선별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명한 월권이다.

2.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는 큰 흐름으로 보아 진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직도 실험 중이다. 완성된 민주주의는 아직 없다. 따라서 어떤 민주주의가 더 나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나 하는 것은 전 인류의 지속적인 관심사이며 논쟁과 실험의 대상이다.

정치학에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란 자유주의+ 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세력은 없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하나일 뿐이다. 또 이 때의 자유주의 역시 자본주의 운용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본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디투며 변천해 왔다. 자유주의, 케인즈주의(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으로 자본주의의 주류가 변화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곧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조국교수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여러 노선 중 하나일 뿐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기진 정치노선을 신보수주의라 불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보수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공격을 받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영국의 대처와 메이어, 독일의 콜, 프랑스의 시락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를 비판하는 것, 즉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다.

3. 국가보안법위반자를 두 번 죽여선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국가이고, 국가는 바로 정부라는 등식은 군부독재정권이 자신의 정통성을 위장하고, 반대자를 무단으로 억누르는 데 사용한 파쇼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민주화보상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독재자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우선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상심의위원회가 같은 이유로 또 한번 희생시키는 부관참시(剖棺斬屍)의 비극은 있어선 안된다.

토 론 문

1. 국가보안법의 기능

- 1)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법
 - 현행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 확대하여 만든 것으로 이후 몇 번에 걸쳐 개정, 악화되었음
- 2) 이러한 사정은 2차세계대전 전후 독립한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그려함
 - ⇒ 1948년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효시로, 1950년대의 필리핀의 법령, 대만의 계엄령, 태국의 군사쿠데타 이후의 법령, 196~70년대의 인도네시아법, 인도의 국가보안법,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내보안법
 - 제국주의 세력이 독립을 주장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식민지 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법들을 독립 후 지배세력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도입한 것임
- 3) 이런 법들의 특징은
 - 첫째, 정치적 예방주의
 - 둘째, 사상의 위험성을 결정적 증거로 함

서상섭(한나라당 국회의원)

셋째, 범죄 구성 요건의 규정이 애매하며 불혹정적인 개념을 사용
넷째, 사법절차의 한계설정 없이 구속, 심문, 위협 등이 권력에 의해 자행됨
(개발독재와 인권, 박홍규 영남대 교수)

- 4) 이들 국가는 정부의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사형과 테러, 구속, 고문 등을 자행했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되었음

2.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는 누구인가

- 1) 70년대 들어 이런 독재 권력에 맞서,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도전이 계속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독재권력의 법은 더욱 개악되고, 탄압은 더 심해짐
- 2) 우리의 경우 1972년 10월 10월유신이 발표되고 이후 4회의 계엄령, 2회의 위수령, 1회의 비상사태, 9회의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11,384명이 국가보안법(1,968명), 반공법(4,167명), 정치활동정화법(3,849명), 긴급조치 9호 위반(726명) 등으로 검거되었음
- 3)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은 이렇듯 독재권력에 항거하여 투쟁한 사람들임
 - 민청학련, 민주화추진위원회, 제헌의회 사건 등 무수한 조직사건이 7~80년대에 양산됨

3.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

- 1) 이미 광주시태가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고, 폭도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비뀌었으며,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
- 2) 집시법이나 여타 다른 법률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아직 국가보안법 관련자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
- 3) 지난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관련자들과의 차이는 사실 미미함

⇒ 80년대 중반부터는 책자나 문건을 소지 했는지 여부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이거나 적용되기
도 했음

4)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 역시 다른 민주화 운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재권력에 맞서 항거했던 사람들이며,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더 심한 탄압과 무거운 중형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것임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황 및 과제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주제가 국가보안법과 관련되다보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논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경실련 통일협회가 조사한 바로는 16대 국회의원 중 96.5%가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조건부(김정일 당방후 개정, 노동당 규약과 동시 개정 등)로 개폐를 주장하고 있음

2) 현재 본인 등의 의원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인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 폐지안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고 한나라당이 지금은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폐지안을 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3) 여야의 젊은 의원들이 모여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으나 전술적인 고려 때문에 개정안 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
⇒ 정개모 동향, 미래연대 동향 등

4)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같은 당 안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개정에는 세심한 전술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지정토론 4

민주화운동과 국보법의 등식

김삼웅(대한매일 주필)

일제잔재인 국가보안법

많은 사람이 국가 보안법을 자유당 정권이 처음으로 제정하고 역대 정권이 악용해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현행 국가보안법의 시조(始祖)는 자유당 정권이다. 그러나 진짜 원조는 일제시대에 제정되었다. 그것도 한일합병 이전인 1907년 7월 27일 통감부 법률 제2호로 제정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하고자, 식민지 지배를 위한 치안법으로 중벌주의적인 치안형법으로 보안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3·1운동 때 항일 민중을 처벌하는 데 큰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수많은 애국지사와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국민이 악형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의 보안법 제1조는 “내부대신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경찰관은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대중의 운동 혹은 군중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며 또 해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한국인의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는 악법으로써 식민통치 기간에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만들어 애국지사들을 탄압하는 옮기미가 되었던 보안법이 해방된 조국에서 몇차례 개정과 ‘통폐합’(반공법과)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래심줄 같은 명줄을 유지하면서 애국자를 죽이고 민주인사들을 옮겨는 데 악용돼 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개정 방침을 밝혔지만 공동여당인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

고 특히 한나리당은 ‘색깔’ 시비를 벌이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이 과연 수구세력의 완강한 저항을 돌파하면서 개정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에서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목표 아래 △반국가단체 친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포상금지급조항(21조)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유엔 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위반’ 이란 지적까지 받은 반국가단체친양, 고무죄에 대해 법 적용기준을 엄격히 제안하거나 폐지를 검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박석률선생이 발제문에서 밝혔듯이 민주화운동사에서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의 의미는 대단하다. 군사독재가 가장 강력한 반독재 투쟁시건에는 어김없이 보안법을 적용했다. 독재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나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보안법을 적용하여 시국사건을 조작하거나 엉뚱하게 얹어서 국민을 협박했다.

군사정권 시절의 수많은 공안사건이 전부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사건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주의의 지령에 따라 활동해온 조직이나 집단을 민주화운동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체제를 회복하려는 뚜렷한 목표와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엉뚱하게 좌경·용공사건으로 기소되고 독재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인사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은 곧 사회정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부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진행중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법률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가동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00여건의 십사 사건 중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조작된 보안법사건 가려내야

이같은 현상은 정부와 보상심의위원회가 과거 군사정권과 비슷한 시각에서 보안법 위반사건을 민주화운동과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보안법위반사건(사람)을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개중에는 분명히 반국가 활동을 해온 조직이나 개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안당국의 필요에 따라 조작하거나 엉뚱한 사건과 연계시켜 희생양으로 만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률이 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고문에 의해 조작한 사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날조한 사건, 개인간의 모략으로 만들어진 사건 등 수많은 사람이 좌경용공으로 몰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독재정권의 가장 심한 탄압과 희생을 당해온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없이는 국민의 정부의 존재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인권법이 선포되고 현직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이라 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유신체제 철폐를 주장하다 집단구속된 민청학련 사건이나 남민전사건 등을 반국가단체로 인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이밖에 학생이나 노동자들의 각종 의식화모임을 보안법으로 묶어 국면전환용 희생양으로 삼아온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루속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북화해 시대에 보안법의 존재는 개화시대의 상투처럼 거주장스러운 존재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반인권법으로 지적된 반문명의 법률이기도 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가 보안법의 법이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한대로 “헌법과의 관계에서 위헌적이고, 형법 등 형벌법규와의 관계에서는 중복적이며, 남북교류협력법 등과의 관계에서는 상충적”인 이 법의 개·폐는 물론이지만 당장 이같은 일제잔재의 악법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하겠다.

1998년 11월 한겨레신문사가 보안법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변호사의 92.9%, 법학교수의 99%, 일반국민의 78%가 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문가 그룹의 거의 전부, 국민의 대다수가 개·폐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오직 소수의 수구기득권 세력만이 이 법률의 존속을 주장한다. 국가안보를 빙자한 기득권 수호라는 목적에서이다.

보안법의 개·폐작업과 동시에 각종 정치적 이유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게서 보안법의 울기미를 벗겨주어야 한다. 이제라도 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토 론 문

박 연 철(변호사)

관·군·경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진상규명에관한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 법에서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시기와 내용은 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대로 '1969. 8. 7.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입니다. 위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역사적, 이념적 사명을 다하여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된 죄명을 형식적으로 관찰하면, 국가보안법위반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하고,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체제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위원회는, 특히 법무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을 논할 때, 이에 반발하는 집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경우는, 첫째, 1945년 건국 이후 우리나라가 빙곤을 벗어나지 못할 때 혹시당하였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하여 이릉다할 보상을 해주지 못해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민주화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희생정신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도와 다른 군·경 종사자의 공헌도의 등가성(等價性)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우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변론에 임하여 오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과다하게 적용되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항거하는 것을 곧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한문화행위로 단죄하는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저항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구축(驅逐)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활동한 인사에 대하여서, 현재의 위원회에서, 명예회복조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깊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사상·양심의 자유가 있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정당을 결성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 정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 집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까지 이르려면, 먼저 우리의 시각교정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체제란, 자유민주주의체제 일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체제 일수도 있으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라는 큰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인간적, 사상적 여유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자나,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자나, 모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 나라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적 억압과 투쟁을 불사하는 적대자가 아니라, 비록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각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동반자의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흥금을 털어놓고, 검증하며, 미래를 설정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이 상태에서, 사회주의이념을 견지하고,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이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려 한다는 의심을 계속하는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토 론 문

홍순석(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1. 기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활동을 보면 8400여건의 신청접수에서 심의위원회에서 400여건 심사된 것이 전부이고 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자심사 및 유족심사분과위원회에서 1000여건이 심사되어 심사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것이 현황이다.

이런 심의위원회의 활동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을 차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건들이 거론되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출발로서의 의미도 있는 긍정적인 일이었다.

긍정적이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되자면 애초의 목적과 본질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

국가보안법 관련자 문제를 빼고 진행시키려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반신불구의 활동으로 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탄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미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는 국제적 지적과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인권탄압과 민주화, 통일의 걸림돌로 시급히 개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처벌된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과거에도 정치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너무도 흔하게 그랬듯이 생색내기식 활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에서 국가보안법관련자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 현재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정 현황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 230여개 단체가 모여있고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대책기구들이 만들어져서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개정을 발의한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도 개정안을 만들어 6월에 통과시키겠다는 밀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 15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었고 정치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보안법의 개폐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듯 했지만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오히려 더 후퇴되고 조건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정치사회단체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아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명백해도 한 개인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들어 처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7조의 이러한 골격을 유지하는 한 국가보안법 개정은 아무런 실질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실효성도 없이 개정되거나 폐지가 되지않는 상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이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에서 국가보안법사건이 올바르게 심의되자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3. 앞서의 기조 발제자들의 내용 속에도 박정희 독재정권은 초기 한일굴욕외교 반대, 한일회담 비준 반대에서 3선개헌 반대투쟁, 유신체제 철폐를 주장한 1974년의 학생투쟁을 반공법으로 탄압하여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정권 시절에도 80년대 후반 이후 통치권력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그때마다 민주화추진위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인민노련 사건, 사노맹 사건 등 수많은 활동가들의 조직적 항거와 투쟁의 기본 성격을 왜곡하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조직하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김영삼 문민시대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시절도 국가보안법 피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민주화 운동과 분리시키려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독재권력들이 자기의 정권안보를 위해 벌인 어떤 일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진자들이 가장 합법적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권유지의 위기 순간마다 탈출구로 활용한 것이 명백하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국민의 양심은 국가가 관리 할 수 없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고 그시기에 세계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제19조에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자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다.

잘못된 악법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잘못된 악법에 의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되고 이는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것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참되게 꽂피게 하려는 민족민주 진영과 과거의 암울한 반인권과 민족의 대결과 긴장을 유지하려는 반역사적인 세력과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의 새로운 투쟁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과,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가는 자리가 되야할 것이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건의서

2000.12.15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국가보안법사건 대책위원회

〈 관련자 여부 심의에 대한 건의사항 〉

1.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장 기혹한 탄압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는 그 자체가 민주화운동임을 확인합니다.

지금 전국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운동단체들만이 아니라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들까지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의 움직임에서 그치지 않고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반민주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7조 3항의 폐지를 권고하여 온 바 이미 전 세계적 관심 속에서 폐지 직전의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이름에 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모든 반정부세력 및 민주화 운동세력의 핵심세력을 기혹하게 탄압해 온 악법이었습니다. 85년 이후에는 양심수의 70%가 국가보안법사건이었으며, 다시 이중의 70% 이상이 7조 3항에 의한 이적단체 규정이었는 바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은 거의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와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지도인사들, 통일운동의 지도인사들, 진보정당활동의 지도인사들, 심지어는 종교계의 지도인사들은 거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같은 조직

사건이나 정치사건에도 지도 간부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등 국가보안법은 지난 30여 년의 민주화운동의 모든 곳에 씨실 날실로 얹혀있는 상황입니다.

2. 민주화운동의 행위에 대한 사실판단에서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생각 여부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사건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를 검토하는데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지점이 현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의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나와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의 조항은 바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의 정권이 행한 소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일 뿐입니다.

혹여 국가보안법사건이 대부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일면서도'라고 판결되었음을 들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세력과 같이 규정하려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현행 법조문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 온몸을 던져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온 사람들을 모멸하는 소행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과연 '좌파'도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법률 제정과정의 국회 공청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설사

사회주의 등 이념세력의 민주화운동의 공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창장을 줄 수 있느냐라는 사고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동안 오른쪽(우파)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다면 술한 사회주의 등 이념적 지향을 표방한 세력들은 왼쪽(좌파)에서 이 땅의 민주화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활동을 해왔음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3. 만일 국가보안법사건을 민주화운동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민주화운동의 왜곡이자,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사건에는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조작·과장된 사건 이외 사회주의 등의 이념적 지향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한 세력들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평하나 왜곡없는 평가가 요구됩니다.

설사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결코 어긋나는 것이 아님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나라들이 사회주의당 및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이념을 내걸은 조직들도 당면투쟁에서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파괴된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음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민청학련 이래로 남민전, 전민노련, 제헌의회를 비롯하여 사노맹, 중부지역당 사건까지 모두 지도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어 민주화운동에서 배제되고 그 지도하에서 투쟁한 사람들 중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사건을 민주화운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을 왜곡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85년도 서노련 사건에서 13인의 지도부가 한 자리서 잡혀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한 고문을 거쳐 편집부 일을 했던 6인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고, 그 외는 집시법 및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사건이 민주화운동에서 배제된다면 같이 운동을 하였던 서노련 지도부들 중 누구는 민주화운동을 하고 누구는 안한 것으로

되는 헤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을 했느냐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또는 어떤 사상, 철학,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문제가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시위에서 구속된 사람이라도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는 억지로 조직을 수사기관에서 만들어 국가보안법을 써운 경우들도 많았던 추악한 과거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가 민주화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결어에 대신하여 - 당부의 말씀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민주화운동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심사하기 전에 미리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부정적 예단을 심의방안으로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사건의 경우 재심을 받아 무죄를 받아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 법률에서 대상자로 규정한 유죄판결자와 정면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어떤 법으로 탄압받았는지를 유독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만 사전에 따지는 것은 바로 위에서 밝힌 민주화운동 관련자내의 차별대우이며, 이 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디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맡은 위원회에서 제반 사회적 우려를 살펴보시고 그 어떤 선입견이나 정치적 의도에도 의연하시게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에 대한 건의사항〉

1. 명예회복에 대한 입장

- 단순히 사면·복권, 복학 등의 조처만이 아니라, 전과조치의 말소 및 민주화운동 기여자로의 정정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에 희생당한 점에 대한 국가가 인정하는 훈장, 감사패 등의 명예조치가 요구됩니다.

- 가해자 없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사실 온전한 것이 아

닙니다. 최소한 가해자들의 양심선언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언정 지난 시기 권위주의적 통치권력에 기댄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들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처로 사회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2. 보상에 대한 입장

- 구금 및 구속기간에 대한 세계적 표준에 의한 보상금이 정당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 특히 수사·구금·구속기간 및 그 후에 발생 또는 악화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순히 과거의 해당기간 동안의 불이익을 넘어 그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일에 모든 개인이 주저하지 않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3. 기념사업 및 추모단체 지원에 대한 입장

- 민주화운동자들을 기리는 묘역 조성 및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여타 법을 이유로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체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별첨 1》

이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대표적 조직사건인 사노맹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을 조국(동국대 법대교수 - 형법)가 정리한 것으로 당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상당히 정치적 잣대에 의해 과도하게 남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사노맹'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의 부당성

1. 사노맹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사회주의 사상과 조직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설사 그 사상과 조직이 급진적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경향성'이 아니라 '실제적 위험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957년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폭력적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을 가진 미국공산당을 조직한 공산당간부들에 대한 상고심인 '예이츠 사건'(Yates v. United States, 354 U.S. 298(1957))에서, "불법한 행동과 직결되는 선동"(advocacy directed at promotingunlawful action)과 "추상적인 원리의 선동"(advocacy of abstract doctrine)은 구별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상고인들은 폭력적 정부전복이라는 원리를 주장하였을 뿐, 그것을 위한 행동을 선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판시하여 그 이전의 만연했던 '매카시즘'적 분위기를 전환시킨 바 있으며, 이는 이후 미국 연방최고법원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향의 단체에 대한 일관된 방침으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철공소의 정문 앞에서 동 철공소 노동자 69명이 일본공산당의 문건 '우리는 무장의 준비와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문서를 약 70부 반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津地判, 昭 27.3.28, 判時 48).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이 문서가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의 규제에 해당하는 문서임을 인정하였지만, 당해 문서의 성질은 실행하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혹은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고로, 행위자가 내란의 죄를 실행하려는 의도 외에 결과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혹은 개연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인식하여 그 행위를 나타내려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에 입각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시한 바 있다.

외에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사회당 및 공산당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컨대 사회주의혁명의 전위조직인 공산당에 대해서조차도 폭력적 방법을 개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 강령이 과격하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노맹의 강령은 서구 좌파 정당의 강령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조직 수준은 서구 좌파 정당에 비견할 것이 못된다. 이상의 점에서 볼 때 사노맹의 강령은 그 좌익적 내용

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범위' 안에 있으며, 조직수준이나 활동방식이 우리 사회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 왔다고 볼 수 없다.

2. 사노맹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과도하다.

다음으로 냉전과 독재의 산물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다 할지라도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칭한다. 즉, 국보법상 '반국가단체'가 되려면 정부를 '침침(僭稱)'하고 '국가변란'을 꾀하여야 하며, 그 수준은 대한민국의 일정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도단체(insurgency) 또는 교전단체(belligerency)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북한과 무관한 그리고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남한 내의 진보적 정치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기혹하게 탄압해왔다.

예컨대 80년 말 이후 90년대 초에 걸쳐 사노맹 이외에도 수많은 '사회주의 혁명전위조직'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율되었다. 그 중에서 "반국가단체"로 의율된 조직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부지역당> 등의 극소수이며, <인천 지역민주노동자연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노동계급 그룹>,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반제반파소민중민주주의혁명 그룹>, <한국사회주의노동당준비위원회>, <국제사회주의자>, <국제공산당>,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동맹> 등의 조직의 경우는 그 강령의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적단체"로 의율되었다.

<노동계급 그룹>의 강령을 보면,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그것의 사회적 공동소유로의 전화, 전사회구성원의 자유롭고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 전체에 의한 계획경 제로의 전화,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대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노동자계급이 사회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즉 모든 반동적 계급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지배계급의 권력을 파괴하고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자신의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주의자>(IS)는 그 강령에서 "우리는 현재의 체제가 일련의 개혁을 통해 변혁될 수 없고 오로지 폭력-계급혁명으

로 전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폭력혁명으로 남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선언하고 있고, <혁명적 국제사회 주의노동자동맹>은 그 강령에서 "세계공산주의연방의 건설은 프롤레타리아가 계급 그 자체를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의 마지막 임무이다. ... 우리는 세계사회주의혁명을 자신의 운동의 방향으로 삼고 모든 부르조아권력을 분쇄하고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 ... 이러한 혁명적 계급투쟁의 강력한 도구로써' 혁명당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노동현장에 "공장소조", "공장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파업을 주도하였고, 학생운동, 재야운동 등에도 자신의 파견망을 갖추고 활동하였으며,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의 경우는 군대에까지 파견망이 갖추고 있었고, 또한 이들 조직 모두는 스스로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전위혁명기조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요컨대 국보법을 인정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노맹에 대한 반국가 단체 규정은 과도한 것이다. '이적단체'로 규율된 여타 사회주의운동 조직과 기본적으로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점, 그 활동이 공세적,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규정을 부여받고 과도한 탄압을 받았던 것이다.

'사회주의과학원'의 '이적단체' 규정의 부당성

대학원생 및 사회활동기가 사회주의연구를 공동으로 할 목적을 결성된 '사회주의과학원'은 애초에 국보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직의 "임시강령"과 '사회주의과학원'이 제작한 (우리사상)지의 내용 중에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계급이 철폐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근본적 사회혁명", "혁명적 방식을 통한 민중권력의 수립" 등의 급진적인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만을 가지고 '사회주의과학원'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이상의 문구는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행동과 직결된 바 없는 추상적인 지향의 개념화였으며, '사회주의과학원'의 실제활동은 이론연구에 국한되고 있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군사독재와 천민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하여 정치상황은 급격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한편 빠레스트로이카의 영향 하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계와 대학원에서는 사회주의연구가 일대 불을 일으키고 있었다.

'사회주의과학원' 관련자들도 이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 속에서 반자본주의적 지향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표현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생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 당시 대학가의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단골로 오르던 주제였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①당시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사회주의과학원'은 시위나 파업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반체제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론연구 그 자체를 위한 단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②그 '임시강령'의 내용과 수준 역시 당시의 여러 '이적단체'급의 조직에 비해 취약했다. 이는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며, 실제 활동내용에서도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③문제가 된 '임시강령'은 초안자의 생각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한 내부의 논란이 계속되어 확정되지 못한 문자 그대로 "임시적"인 것이었다. 이는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수많은 '사회주의혁명조직', 예컨대 <인천 지역민주노동자동맹>,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노동

계급 그룹>,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 <반제반파소민중민주주의혁명 그룹>, <한국사회주의노동당준비위원회>, <국제사회주의자>, <국제공산당> 등은 "이적단체"로 의율되었다. 이 조직들은 혁명적 강령 외에도 노동현장에 "공장소조", "공장위원회" 등을 결성하여 파업을 주도하였고, 학생운동, 재야운동 등에도 자신의 파견망을 갖추고 활동하였으며,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의 경우는 군대에 까지 파견망이 갖추고 있었고, 또한 이들 조직 모두는 스스로를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전위혁명가조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주의과학원'이 "이적단체"로 의율된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요컨대 '사회주의과학원'의 "임시강령"이나 (우리사상)지 등에서 명시된 사회주의적 표현은, 그 구성원의 직접적인 행동과 직결된 바 없는 추상적인 지향의 개념화였을 뿐이었으며, 또한 '사회주의과학원'은 그 규모로 보나 구성원의 성격으로 보나 그 강령을 실현할 현실적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전연 없었던 바, 이에 대한 국보법 적용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과도한 법 집행의 표본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에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들의 입장

2000. 11. 29.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공동 대책위

1. 국가보안법은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52년 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반공과 근대화만이 국시였고, 반공과 근대학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설령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내팽개쳐졌다. 심지어는 헌법 자체마저도 하나의 휴지조각에 불과한 문서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동안 무소불위의 위력을 과시하여 왔다.

역대 정권들은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하여 훌러왔으며, 미국과 자신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민주적 요구와 민중들의 투쟁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민중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문, 징역 등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남북의 냉전적 대치상황은 오래 전에 끝이 났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조선노동당의 창건일 행사에 참석하는 시기에, 과거 남북이 대치하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근거를 상실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에서 정권의 안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 법에 의해 무수히 많은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 세력이 희생되어온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해 희생당하여 온 모든 민중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한다.

2.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 소신있게 결단한 21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폐지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 존폐를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여 온 이 사회의 성역을 결정적으로 깨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이 땅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재 잔재세력, 수구세력들은 결코 자신들의 생명줄인 국가보안법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청산되었어야 할 반민주세력인 김용갑 의원이 민주당의 국가보안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도발성 언사를 구사한 것에서 그 일단이 드러난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구세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간 개혁세력임을 자처하였던 소장의원들, 운동권출신들 가운데에서 일부가 당론을 눈치보는 허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실 정계에 들어간 것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개인적 입신출세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자신들이 익히 온몸으로 느끼고 겪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소신껏 나서야 함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김대중대통령이 그간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되어 국제 사회에서 노벨평화상을 받는 상황, 국제 엠네스티 등의 국가

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정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3. 우리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들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관련자들은 지금껏 가장 철저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일신을 들보지 않은 투쟁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된 것을 역설적으로 명예롭게 여기고 있을 만큼 이 땅은 철저한 반역의 역사를 거듭하였다. 그러한 역사속에서 국가보안법의 피해는 이미 지난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적인 사찰과 감시, 심지어는 정권의 필요에 따른 반복되는 '재건 조작 사건'들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회활동 전반에서 전과로 인한 피해 등을 계속 강요받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든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음을 이유로 반복되는 역사적 왜곡과 피해를 반복하여 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에 대한 우리 국가보안법조사기관 관련자들 공동대응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일각에서 이 법 2조에서 민주화운동을 '민주 현정질서를 확립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건만 유독 국가보안법 관련자들의 경우는 '실정법' 운운하며 이에서 배제시키려는 음모가 획책되고 있음을 주시한다.

국가보안법이 지금껏 이 땅에서 자행해온 반민주, 반민족적 행위에 대하여, 오랜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이미 사회적 동의가 확인된 만큼, 국가보안법조사기관을 민주화운동 속에서 배제하거나 그로써 민주화운동을 자의적으로 왜곡, 축소하거나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땅에 더 이상의 오명과 치욕을 남겨두지 말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상, 표현의 자유 쟁취하자!

국가보안법폐지와 박정희 기념관 반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결의대회 성명서

국가보안법 사건 및 재야, 청년, 학생운동 세력의 공동접수에 임하는 국민연대의 입장

2000. 10. 16.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국가보안법 조직사건 공동 대책위

오늘 박정희 독재정권의 침몰에 큰 역할을 한 부마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국가보안법사건 및 청년, 학생운동 세력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공동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우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그 동안 국가안보란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권력에 맞서 혁신적으로 투쟁하여 온 민족민주세력이 드디어 '민주현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복권되기 시작했음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에서 부족함이 많음을 알고 있다. 또한 이 부족한 내용조차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제반 정치·사회적 상황이 녹녹치 않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사건 및 청년, 학생운동 세력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공동접수에 즐거워 이 법이 '국민 저항권'을 전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차원의 적극적 의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직은 불충분한 '미완의 법'으로 위상짓고, 이후 전 민족민주진영이 함께 확장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 운동을 유물로 기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길임을 분명히 한다.

1. 민주화운동을 탄압해온 대표적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한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조선노동당의 창건일 행사에 참석하는 시기에, 과거 남북이 대치하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에서 정권의 안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고 이 법에 의해 무수한 민주화 운동 및 민중운동 세력이 희생되어온 것은 이미 온 국민이다 아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반민주 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피해받은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 세력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과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각의 수구세력의 논법대로 민주화운동에서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배제된다면 이는 또 다른 사실 왜곡이자 민주화 운동을 축소·폄하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든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권위주의적 세력에 맞서 투쟁하였던 세력은 모두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는 독립유공자에 좌익운동 세력을 포함시켜 인정하는 추세에 부합된다고 본다.

2. 현재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과 같은 반민주적인 행태를 용납치 않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독재자를 위한 기념관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통치권력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정권에 편승하였던 세력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 주범의 하나인 박정희 독재자를 기리는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이다.

우리는 박정희 기념관을 나찌의 전쟁기념관처럼 그의 쿠데타로 이어지는 민중학살과 민주주의 암살이라는 18년 동안의 추악한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기념관으로 세우는 일이라면 너도나도 나설 것이나 이런 진상조사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추종세력들에 의해 찬양일변도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또다시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만행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우리는 현재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의 한계를 직시하고 향후 법개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재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은 민주화운동의 성격규정과 참여범위 및 탄압에 따른 피해 양태에 대하여 대단히 제한적이며 불충족하다. 그러나 불충족한 이 법조차 오랜 민주화 투쟁의 산물임을 분명히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보다 철저한 법으로의 개정투쟁의 주체로 나섰다.

따라서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외에 강제징집, 연행 후 기소유예, 공개 및 내부수배 등 다양한 양태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현행 법이 아닌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 개정투쟁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자꾸 명예회복과 보상을 대립적으로 만들고, 보상문제를 영혼을 파는 문제처럼 왜곡시키며 국민을 혼혹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며, 진정한 명예회복에는 사회적 차원의 법 제도 및 기념사업 뿐 아니라 반드시 개인적 피해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이 상응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다. 지금껏 우리가 일궈온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올바로 평가되고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를 넘어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완전히 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하다. 비록 현재 민주화운동세력이 각개 약진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전개해온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진력해 나갈 것임을 온 국민 앞에 밝힌다.

2000년 10월 1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개정안

2001. 4. 7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명예회복위원회 법개정소위원회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1. 5. 16. 이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현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또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자를 말한다.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유죄판결·수배·해직·학사징계·강제징집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위로금·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
2. 관련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심의·결정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유형 및 규모의 심의·결정
7. 관련자 추모단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단체에 대한 지원

8.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민주화운동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수여하는 관련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6. 10.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일로 본다.

③ 관련자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관련자의 활동을 교육·홍보하여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과서에 민주화운동의 주요사항이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복권과 전과 기록의 말소) ①대통령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형의 언도를 받은 자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하여야 한다.

② 사면법 제21조 내지 27조는 대통령이 행하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에도 준용한다.

③ 관련자의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 명표를 폐기 한다.

제11조(학사징계기록의 말소와 복학) 각급 학교는 관련자와 학사징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관련자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제12조(복직 등) 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관련자가 회망하는 경우 관련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련자의 징계기록에 관련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해직 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관련자의 희망에 따라 관련자의 직종 나이 등을 고려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것으로 보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불이익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취업이 예정된 관련자가 학사징계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근속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제13조(명예출업장 수여) 각급학교는 관련자 및 유족이 원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하여 명예출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제한, 요시찰인명부, 여권발급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 취급규정 등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특별재심) 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 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관할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면이 있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1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노임 단기통계의 보통인부 노임액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질병을 앓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입원치료기간에 보상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 노임단기통계의 보통인부 노임액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나. 상이를 입은 자, 질병을 앓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보상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노임단기통계의 보통인부 노임액에 노동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 다. 관련자나 유족이 지급한 치료비에 보상결정시점까지의 연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벌금·수배·해직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 가. 구금자의 경우에는 보상결정시점의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형사보상금 상한액에 구금기간을 곱한 금액
 -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벌금액에 보상 결정시점까지의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 다. 수배, 해직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노임단기통계의 보통인부 노임액에 불이익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단, 위 불이익기간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0%에 이르기까지의 소득액을 공제한 금액
 -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준용한다.

제18조(의료지원금)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구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로금) ①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위로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생활지원금) ①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위로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명예회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조치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24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명예회복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제24조(재심의) 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 중 "180일" 및 "240일"은 각각 "120일로" 본다.

제25조(신청인의 동의와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지급)

①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명예회복을 받고자 하거나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7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8조(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 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에 무및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예우 또는 보

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이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1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 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제33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

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기념사업) 정부는 묘역조성 등의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기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1조 제2항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개정안대조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행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 이라 함은 1961. 5. 16. 이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현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현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또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2조 1. "민주화운동" 이라 함은 1961. 5. 16. 이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현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현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또는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이하 "관련자" 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거"는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 뿐 아니라 교육·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항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3.(조항변경)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유죄판결·수배·해직·학사징계·강제징집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 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지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 제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위로금·생활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금등의 지급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① 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금등의 지급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④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심의·결정

현 행 법	개 정 안
6. 관련자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6. (조항변경)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유형 및 규모의 심의·결정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7.(조항변경) 7. 관련자 추모단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단체에 대한 지원
8.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하고,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기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모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 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정부의 사례)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수여하는 관련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6. 10.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정하고 관련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행사

현 행 법	개 정 안
	와 사업을 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념일로 본다. ③ 관련자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민주화운동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④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관련자의 활동을 교육·홍보하여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구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과서에 민주화운동의 주요사항이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조(특별사면, 복권과 전과 기록의 말소) ①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혐의 언도를 받은 자와 혐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하여야 한다. ② 사면법 제21조 내지 27조는 대통령이 행하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에도 준용한다. ③ 관련자의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 명표를 폐기한다.
	제11조(조문 변경) (학사징계기록의 말소와 복학) 각급 학교는 관련자의 학사징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관련자가 원활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제12조(조문변경) (복직 등) 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관련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호봉 및 경력인정,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련자의 징계기록에 관련자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해직 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는 관련자의 희망에 따라 관련자의 직종 나이 등을 고려하여 특별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 16조의 특별채용시험에 의한 것으로 보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불이익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조문변경) (명예출입장 수여) 각급학교는 관련자 및 유족이 원활 경우 출입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하여 명예출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 14조(조문변경) (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제한, 묵시찰인명부, 여권발급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 취급규정 등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특별재심) 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결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관할법원은 재심이 청구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면이 있었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제판결을 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등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7조(보상금)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기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례의 취업기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질병을 앓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률 입은 자, 질병을 앓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률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상실률 및 장례의 취업기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다. 관련자나 유족이 지급한 치료비에 보상결정시점까지의 연5%의 이자를 기산한 금액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벌금·수배·해직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 가. 구금자의 경우에는 보상결정시점의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의 형사보사금 상한액에 구금기간을 곱한 금액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벌금액에 보상 결정시점까지의 연 5%의 이자를 기산한 금액 다. 수배, 해직 또는 취업의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 결정 시점의 통계청 건설노임단기통계의 보통인부 노임액에 불이익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단, 위 불이익기간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0%에 이르기까지의 소득액을 공제한 금액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식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 제4항 삭제

현행법	개정안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기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지원금)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조문변경) 제19조(위로금) ①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희생 및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0조(조문변경) ① 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조문변경)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금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항 삭제
	제22조(조문변경) 위원회는 명예회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조치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24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조문변경) ① 위원회가 명예회복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문변경) (재심의) 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③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 중 "180일" 및 "240일"은 각각 "120일로" 본다.
	제25조(조문변경)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금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현 행 법	개 정 안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암류할 수 없다.	제26조(조문변경)
제16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7조(조문변경)
제17조(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각하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조문변경) ①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복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 등) ①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회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조문변경)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이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0조(조문변경)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조문변경) ①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명예회복이나 보상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로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제32조(조문변경)

현 행 법	개 정 안
제22조(성금의 모금) ①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33조(조문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4조(조문변경) 정부는 묘역조성 등의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조문변경)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조문변경)
제26조(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조문변경)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1조 제2항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전문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

제안일 2000. 11. 27 / 제안자 : 송석찬 의원 외

- 의안명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 제안회기 : 제 215 회
- 제안일 : 2000년 11월 27일
- 제안자 : 송석찬 김경천 김근태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김화중 김희선 문석호 서상섭 설송웅 송영길 송영진 안영근 유재규 이호웅 장성민 정범구 최용규 추미애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사항
- 회부일 : 2000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의 핵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성과로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의 포옹을 하고 6.15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평화를 이루었으므로써 55년 냉전을 마감하고 상생의 새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분단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적 남북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북한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통일, 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 경제 협력 원칙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國家情報院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軍事機密保護法에 規定된 罪로 한다.

2. 公務員年金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을 第2章(利敵의 罪)으로 한다.

3.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4. 枯葉劑後遺症患者支援等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5. 放送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6.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 第9條第2項 ·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를 軍刑法 제5조 내지 제8조 · 제9조제2항 · 제11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7. 國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8. 選舉管理委員會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強盜 및 國家保安法 違反의 犯罪를 強盜로 한다

9. 軍人年金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第2章(利敵의 罪), 國家保安法(第10條를 제외한다)를 第2章(利敵의 罪)로 한다.

10. 戒嚴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11. 軍事法院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를 軍刑法 제80조 및 제81조의 罪,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로 한다.

12. 所得稅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13. 保安觀察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14. 對外貿易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15. 建築土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建築法 · 國家保安法를 建築法 으로 한다.

16. 住宅建設促進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 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規定에 해당되어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로 한다.

17. 測量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罪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罪로 한다.

18. 建設技術管理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罪를 刑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罪로 한다.

19. 建設產業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1항4호 중 國家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 · 제2장 을 형법 제2편 제1장 · 제2장 으로 한다.

20. 電波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6호 중 刑法中 内亂의 罪 · 外患의 罪, 軍刑法 중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刑法中 内亂의 罪 · 外患의 罪, 軍刑法中 利敵의 罪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軍刑法中 利敵의 罪 및 國家保安法 위반의 罪를 軍刑法中 利敵의 罪로 한다.

21. 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22. 情報通信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중 國家保安法, 刑法 第2編第1章·第2章 을
刑法 第2編第1章·第2章 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이
외의 다른 법령에서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일 2001. 4. 27 / 안영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751

· 발의연월일 : 2001. 4. 27.

· 발의자 : 안영근, 이재정, 김원웅, 조정무, 서상섭, 이부
영, 김부겸, 김영춘, 김홍신, 심규철, 김태홍,
김희선, 송영길, 정범구, 이창복, 김경천, 심재
권, 장성민, 김성호, 임종석, 이호웅, 김민석,
박인상, 정철기, 전용학, 정장선, 이미경, 김택
기, 최용규, 조성준, 신계륜, 장영달, 문석호,
천장배, 송석찬, 배기선 의원

주요골자

가. 반국가단체에 관한 정의 가운데 “정부를 침침하거나 국
기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을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으로 함(안 제2조제1항)

나.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하고, 그 구성요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함(안 제7조제1
항).

제안이유

지난 반세기동안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노력은 온갖 부침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북간의 평화협력 및 화해분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대결구도를 타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필요로 하게 된 바, 그 동안 남북이
각자의 체제를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여 왔던 법률
및 제도들이 새로운 시각과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이
와 같은 차원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가운데 오늘날의 상황에
적절치 아니한 조항이나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
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안 제7조제3
항).

라. 반국가단체를 위한 허위사실날조·유포죄, 찬양·고무
또는 허위사실날조·유포를 위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제
작·반포죄, 이와 같은 죄의 미수죄 및 예비·음모죄, 불고지
죄, 참고인의 구인·유치 규정, 구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안 제7조제4항·제5항·제6항·제7항, 제10
조, 제18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國家保安法中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政府를 僞稱하거나 國家를”을 “국가를”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讚揚·鼓舞等”을 “宣傳·煽動”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를 “5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아름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團體나 그 구성원 또는 그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①이 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僞稱하거나 國家를 變亂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내외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 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	第2條(定義) ① _____ 國가를 _____
第7條(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危險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構成員 또는 그指令 을 받은 者의 活動을 譽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 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처하다. ③第1項의 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團體를 構成하거나 이에 加入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하다. ④第3項에 規定된 團體의 構成員으로서 社會秩序의 混亂을 造成할 우려 가 있는 事項에 관하여 하위시설을 構造하거나 流布한 者는 2년 이 상의 有期懲役에 처하다. ⑤第1項·第3項 또는 第4項의 行爲를 할 目的으로 文書·圖書 기타의 表現物을 製作·輸入·複寫·所持·運搬·販賣 또는 取得한 者 는 그 각項에 정한 刑에 처하다. ⑥第1項 또는 第3項 내지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하다. ⑦第3項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謄備 또는 隨謀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에 처하다.	第7條(宣傳·煽動)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를 아름게 할 목적으로 反國家 團體나 그 구성원 또는 그指令을 받은 자의 활동을 宣傳·煽動한 자 는 3년 이하의 懲役에 처하다. ③ _____ 5년 이하 의 懲役에 처하다. (삭제) (삭제) (삭제)
제10조(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하다), 第4項의 罪를 犯한 者는 情을 알면서 檢查機關 또는 情報 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 의 罰金에 处하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刑을 減 輕 또는 免除한다.	(삭제)
第18條(參考人の 拘引·留置)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이 法에 정한 罪의 參考人으로 出席을 요구받은 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2回이 상 出席要求에 불응한 때에는 普藝法院 判事의 拘束令狀을 離付받아 拘引할 수 있다. ②拘束令狀에 의해 參考人을 拘引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近接한 警 察署 기타 적당한 場所에 임시로 留置할 수 있다.	(삭제)
第19條(拘束期間의 延長) ①地方法院判事는 第3條 내지 第10條의 罪로 서 司法警察官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檢查 를 계속할에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2 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 1次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罪로서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檢查를 계속할 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刑事訴訟法 第203條의 拘束 期間의 延長을 2次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의 여정은 각 10日 이내로 한다.	(삭제)